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최종공포일 2024.8.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적용범위)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 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전력기술(주)(이하 “한전기술” 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이하 “협력업체 “라 한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2 조 (직무수행 자세)

-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본 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한전기술과 협력업체 임직원이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면하는 경우에는 명예 서약서(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상호 서명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26>

제 3 조 (청렴·인권경영이행 서약 서류의 제출)

한전기술의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에 의한 협력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및 인권경영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5>

[제목개정 2021.06.15]

제 3 장 윤리적 기준

제 4 조 (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알선·청탁의 금지)

한전기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7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사회적 기준

제 8 조 (접대비 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접대는 1인당 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현금제외)

제 9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한전기술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등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과 골프, 여행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26>

[제목개정 2024.08.26]

제 11 조 (한전기술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한전기술의 임원 및 2직급 이상 직원을 퇴직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1호에 해당되지 않는 2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4.28, 2022.10.31>

- 1.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협력업체 <신설 2017.04.28>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기관 <신설 2017.04.28>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에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04.28>

제 12 조 (불법 근로행위 금지)

국내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 13 조 (위반 행위의 신고)

- ① 청렴한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에게 본 강령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사이트(www.acrc.go.kr) 또는 한전기술 신문고(www.kepco-enc.com)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한전기술은 협력업체가 제1항에 의거 신고할 경우 해당협력업체에 대해 계약상의 불이익 등 보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3>

제 14 조 (위반 시의 조치)

- ① 한전기술은 이 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력약정의 해지 및 영구 퇴출할 수 있다. 단, 위반정도가 영구 퇴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된 때에 한전기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1.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따른 협력약정 해지 및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
 - 2. 계약규정 제61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감점을 반영한다.
 - 3. 계약규정 제103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항 제1호에 의거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한전기술은 이 강령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1. 이 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력약정 해지 및 심의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영구 퇴출 포함)

부칙 (2014.06.25)

1. (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강령의 효력) 이 강령은 사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부분적, 한정적 기준 등을 정한 “지침”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06.25)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강령의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부칙 (2017.04.28)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강령의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7.04.28]

부칙 (2018.12.13)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강령의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8.12.13]

부칙 (2021.06.15)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강령의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21.06.15]

부칙 (2022.10.31)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강령의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의한다.

[본부칙신설 2022.10.31]

부칙 (2024.08.26)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2.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부칙신설 2024.08.26]